

내부감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각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내부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범위, 기준 및 실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본 대학교의 모든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①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되, 정기감사는 기획처에서 범위, 시기 및 대상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특별감사는 감사대상, 감사기간, 감사범위에 대한 법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감사위원회가 시행한다. 단, 위 심의절차는 사안에 따라 생략할수 있다. (개정 2017.08.29.)

②정기감사는 연 1회로 하되, 그 대상은 제규정에 의한 각 부서,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내부대응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중간 및 종료시점에서 감사를 시행한다.(개정 2018.12.20.)

③특별감사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7.03.29., 2017.08.29.)

1. 총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때
2. 소관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때
3. 분쟁 또는 민원 발생시 당사자간 자체 해결이 어려워 대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전산정보원규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3.02.27)

제4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의 회계업무 및 재산(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물품 등)의 취득,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업무
2. 본 대학교 제규정에 의한 각 부서,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의 업무
3. 총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업무
4. 감사위원 회의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업무

제 2 장 감사위원

3-1-12~2 제3편 행 정

제5조(감사위원) ①본 대학교에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감사위원을 둔다.

②감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획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직원인 감사위원의 수는 감사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감사위원 회의의 의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기획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을 대표한다.

제6조(임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2년의 위원임기 종료일 현재 진행중인 감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시까지로 임기를 연장한다.(개정 2016.01.26., 2017.03.29., 2017.08.29.)

제7조(회의) 감사위원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03.29., 2017.08.29.)

1. 정기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특별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감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제8조(증인과 감정인) 감사위원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감사위원의 권한) ①감사위원은 감사위원 회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본 대학교 각 회계연도의 수입·지출의 결산확인
2.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판정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요청
4. 업무처리 우수자에 대한 포상 요청
5. 감사결과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심의
6. 기타 감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감사위원은 감사위원 회의에 의하여 부서별로 감사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위원의 지위) 감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하여 판단한다.

제11조(감사위원의 의무) ①감사위원은 감사에 관한 제규정에 의거하여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를 받는 부서의 기본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 3 장 감사의 실시

제13조(감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기획처장은 감사개시 30일 전까지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실시기간 및 일정
3. 감사 대상 부서
4. 기타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감사의 통지 및 연기요청) ①감사는 그 실시 10일 전에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피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받음으로서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감사실시 5일전까지 감사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피감사부서의 협조) 감사를 받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교직원은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의 생략) 감사위원 회의에서 각 소관부서장이 본 대학교 제규정에 의하여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의 방법) ①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감사로써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감사위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인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장부, 증명서,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③감사위원은 감사실시 중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고 그 시정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위원 회의의 의장을 통하여 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판정 등) 감사위원 회의의 의장은 감사의 결과에 따라 본 대학교

3-1-12~4 제3편 행 정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교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하고, 필요한 경우 변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또는 포상 요청) 감사위원 회의의 의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임면권자(총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징계의결 또는 모범 교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위원 회의의 의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 개선, 주의 등을 해당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지체없이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취한 후 감사위원 회의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 시정 또는 개선 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감사위원 회의의 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산서,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감사위원 회의의 의장은 지체없이 감사위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토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① 감사위원 회의의 의장은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기간
2. 감사대상 부서명
3. 감사위원의 소속·직위·성명
4. 감사의 실시내용
5. 감사에 대한 평가(개인 또는 단체)
6. 감사에 대한 종합의견
7. 시정, 개선 또는 건의 사항

② 감사위원 회의의 의장은 제18조 및 제20조에 의한 조치 및 시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감사결과 후속조치) ① 기획처장은 내부감사결과, 시정, 개선, 주의 등의 요구를 받은 부서의 업무개선 및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행여부에 대한 결과를 부서평가지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08.23.)

②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8.08.23.)

제23조(사무지원) 감사위원 회의의 운영에 따른 사무지원은 소관부서에서 담당

한다.

제24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하고 특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8.08.29.)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